

##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서

검토내역	신규검토[ <input type="checkbox"/> ] 재검토[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] 설계변경검토[ <input type="checkbox"/> ]
현 장 명	제2자유로 종점부(난지도길) 입체화공사
대상시설물	1종시설물[ <input type="checkbox"/> ] 2종시설물[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]
종합의견	적 정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견	주요 보완사항
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###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

가. 공사의 개요	적 정	※ 이전 검토완료 건
나. 안전관리조직	적 정	※ 이전 검토완료 건
다. 공정별 안전점검계획	적 정	
라.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	적 정	
마.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	적 정	
바. 안전관리비 집행계획	적 정	
사. 안전교육계획	적 정	※ 이전 검토완료 건
아. 비상시 긴급조치계획	적 정	

### ②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(해당공종)

가. 가설공사	검토 제외	가설비계 설치계획 보완 (해당 공정 착공 전 제출예정)
나.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	적 정	
다. 콘크리트공사	적 정	
라. 강구조물공사	-	해당 없음
마. 성토 및 절토공사	적 정	
바. 포장공사	적 정	※ 이전 검토완료 건
사. 기타공사	적 정	※ 이전 검토완료 건

### □. 기타사항(국토부장관 고시)

<첨부>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사항

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

직인 생략

[첨부]

##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사항

### ②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(해당 공종)

#### 가. 가설공사

##### 1) 가설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(점토제외)

- 현재 계획된 강관비계(외부)를 시스템 비계로 변경하고, 이에 따른 안전성계산서 및 시공 상세도면 작성
  - “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(2019. 4.)”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스템 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.
  - ※ “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”, “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”의 구조안전성 검토 절차를 참조하여 검토 실시
  - ※ 현지여건(비정형 구조물, 복잡한 구조형식 등)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 강관비계의 조립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.
  - ※ 따라서, 강관비계 적용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의 승인서 제출 필요
  - ※ 또한, 비계 안전성계산서 제출 시, 『건설기술진흥법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부터의 확인 필요(서명, 날인 포함)
- 시스템 비계(내부)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 추가
  - ※ 『건설기술진흥법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의 확인 필요(서명, 날인 포함)
  - ※ 본 가설비계 설치 공정은 해당 공정 착공 전 실정보고 후 시스템비계로 변경 후 안전관리계획(안전성 계산서 및 시공 상세도면 등)을 수립하여 재심사(재승인) 요청 예정임.

### □ 「건설기술진흥법」 개정(2019. 7. 1.)에 따른 안내사항

	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제3항	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제5항
개정내용	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은 제출 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	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실시한 안전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적용시점	이 법 개정 시행(2019. 7. 1.) 후 입찰공고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말한다)하는 건설공사부터	

## □ 참고사항

### ○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준

- 『건설기술 진흥법』 시행규칙 제58조 [별표7]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
- “유해·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”(2009)
- “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” (국토부 고시 2010. 6)
- 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” (국토부 고시 2017. 11. 30)
- “가설공사 표준 시방서” (국토부 고시, 2018. 6. 21)
- 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” (국토부 고시 2014. 12)
- “국가건설기준” (국가건설기준센터 고시 2018. 6. 21)

### ○ 참고

- 본 안전관리계획서는 수정·편철이 용이하도록 바인더로 관리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계획서에 반영하고, 안전점검은 해당 실시 시기에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‘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’의 내용 중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한 공종은 『건설기술 진흥법』 시행규칙 제58조 [별표7]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이 가능하며,
  - 이 경우, 『건설기술 진흥법』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내의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하는 사유, 재승인 요청계획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) 본 OO 공정은 협력업체 미선정 등의 사유로 해당 공종의 세부 계획 수립(개요, 시공상세도면,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,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, 안전성계산서 등)이 곤란하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승인(재심사) 요청 예정입니다.